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-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
업무협약서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함)은 유아기 예술경험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·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중앙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영·유아기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 협력 기반 광역 및 기초단위 영·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영·유아기 예술경험의 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 내용을 정하고 이의 성실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-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영·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
- 지역별 영·유아 문화예술교육 관련 콘텐츠 및 연수 교류
- 기타 양 기관의 영·유아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3조(협약 기간)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다만, 협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4조(협약의 변경) 이 협약의 기간,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해제·해지)

- ①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- 일방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
 -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
 -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
-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간 사전 합의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. 만약,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
제7조(법적구속력 배제)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5월 4일

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
센터장 이정미

이정미



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
원장 이규석

이규석